

[별지 제13호서식]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(수출/수입)

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(수출/수입)

조사 대상 업체	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대표자생년월일 ⑤ 사업장소재지			
	통지 내용			
	(예시) 자료제출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			
	⑥ 조사기간			
	⑦ 조사대상기간 ⑧ 조사대상물품 ⑨ 조사사유			
⑩ 조사내용 - 조사내용 - 질문내용: 질문서 별첨				
⑪ 제출요구자료		- 별지 목록 참조	제출기한 (예시)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(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)	
⑫ 원산지조사팀장		직급	성명	
<p>1. (수입물품)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수출물품)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·화재발생·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조사를 받기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3. 귀사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(추징)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</p> <p>4. 아울러, 귀사는 같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변호사,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</p> <p>5. (수입물품) 서면조사 결과,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(직접검증)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사실 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. (간접검증) 체약상대국에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사실 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.</p>				
<p>붙임: 1. 자료제출 연기신청서 1부. 2. 위임장 1부. 끝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세 관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중</p>				